

사천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7-제56호
----------	-----------

발의연월일 2007. 7. 30.

발 의 자 김석관 의원 외 3

1. 제안이유

보조금 사용시 집행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부응함은 물론 보조금의 사후 정산과 평가를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 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집행할 때는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정산 시에는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함(안 제11조제2항)
- 나. 매년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야 함(안 제18조)
- 다. 보조금 지원사업의 평가시 필요한 경우 시민·관련단체 등이 평가 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음(안 제18조)
- 라. 보조사업 완료시 정산결과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사천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안 제19조)

3. 참 고 사 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나.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 “사천시보조금관리조례”를 “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을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로 한다.

제1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집행할 때는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정산 시에는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할 수 있다.

제18조를 제20조로, 제19조를 제21조로 하고, 제18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평가) ①시장은 매년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보조금 지원사업의 평가시 필요한 경우 시민·관련단체 등이 평가 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시장은 보조금 지원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단체에 대한 표창·연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보조사업의 정산결과 등 공개) 시장은 보조사업 완료시 정산결과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결과를 사천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명 : 사천시보조금관리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1조(용도의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신 설></p> <p><신 설></p>	<p>제명 : 사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p> <p>제1조(목적) -----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 ----- -----</p> <p>제11조(용도의 사용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집행할 때는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정산 시에는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할 수 있다.</p> <p>제18조(평가) ① 시장은 매년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 data-bbox="172 920 338 958"><신설></p> <p data-bbox="159 1294 632 1332">제18조(수당 및 여비) (생략)</p> <p data-bbox="159 1417 560 1456">제19조(시행규칙) (생략)</p>	<p data-bbox="802 365 1436 537">② 시장은 보조금 지원사업의 평가시 필요한 경우 시민·관련단체 등이 평가 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p> <p data-bbox="802 562 1436 801">③ 시장은 보조금 지원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단체에 대한 표창·연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 data-bbox="802 898 1436 1205">제19조(보조사업의 정산결과 등 공개) 시장은 보조사업 완료시 정산결과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사전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p> <p data-bbox="802 1301 1425 1339">제20조(수당 및 여비) (현행과 같음)</p> <p data-bbox="802 1435 1347 1473">제21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p>

관계법령 발췌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공공기관의 범위 등)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으로 한다.

- ②법 제17조제1항에서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이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를 제외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모든 재정지출을 말한다.
- ③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④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정산과 사후평가 등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⑤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